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KCVS)  
User's Guide

목차

- I. 조사목적
- II. 조사대상
- III. 조사표 구성 및 내용
- IV. 자료수집방법
- V. 가중치 부여방법
- VI. 자료구조 및 특성

## I. 조사목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숨은 범죄(hidden crime) 발생률을 파악하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각종 형사정책 수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범죄피해조사는 모집단의 편향성, 표본의 대표성, 표집방법 및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과 한계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과학화된 통계자료로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예방정책의 효율성 및 형사사법기관의 적절한 활동수준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치안수요와 같은 범죄현상에 관한 종합적 기초 정보가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는 지역 사회별로 분포하는 범죄 실태 및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8차 범죄피해조사(조사연도 2008) 시행<sup>1)</sup>을 앞두고, 피해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 기존 피해조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통계청 승인 조건 및 절차준수)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연구는 범죄현상에 대한 과학화된 조사방법론을 개발하여 ① 주요 지표범죄(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괴롭힘), 손괴 등)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및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 등을 파악하고, ②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며, ③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범죄피해경험과 관련 정보를 과학화된 시계열 자료형태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이번 범죄피해조사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범죄피해조사라는 이름으로 8번째 실시하는 조사이다. 첫 번째로 실시된 1990년의 범죄피해조사는 서울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하였고, 다섯 번째로 실시된 2000년의 범죄피해조사는 국제범죄피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그간에 이루어진 조사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 II. 조사대상

### 1. 모집단 분석 및 표본추출틀 작성

#### □ 조사모집단 정의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 조사모집단 분포

- 보통 및 아파트조사구 현황이며 섬조사구(2)는 제외됨
- 광역시의 읍면부는 동부에 포함

#### □ 표본 추출틀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
- 조사하기 어려운 섬조사구,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을 제외
- 2005년 11월 ~ 2007년 12월 사이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 조사구를 추가하여 표본추출틀을 보완함(4,448개 조사구)  
⇒ 총 254,601개 조사구를 최종 표본 추출틀로 사용

<표 2-1 > 지역층별 가구 및 주택 현황

	조사구	가구	비농림어가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주택2)
전체	264,183	15,823,206	14,209,756	12,427,746	3,923,083	6,624,607	1,880,056
서울	54,541	3,309,699	3,290,746	2,241,426	443,455	1,217,216	580,755
부산	20,042	1,185,403	1,165,612	912,359	248,968	520,682	142,709
대구	13,382	814,583	789,745	590,616	172,093	356,727	61,796
인천	14,047	815,376	795,750	680,193	99,530	380,695	199,968
광주	7,509	460,089	440,010	366,232	91,887	260,675	13,670
대전	8,017	478,862	464,515	363,526	85,525	233,992	44,009
울산	5,560	339,095	320,667	262,462	63,404	168,469	30,589
경기 동부	44,939	2,757,337	2,690,248	2,091,996	270,964	1,422,838	398,194
읍면부	10,005	571,728	440,953	515,972	219,363	216,982	79,627
강원 동부	5,296	315,403	293,923	256,043	77,918	159,223	18,902
읍면부	3,576	205,222	125,039	189,618	136,292	38,430	14,896
충북 동부	5,004	307,283	290,376	238,826	62,946	160,391	15,489
읍면부	3,425	197,918	112,107	184,956	128,629	42,545	13,782
충남 동부	3,836	236,823	222,676	192,422	43,563	128,490	20,369
읍면부	7,245	421,684	236,932	389,306	264,971	96,572	27,763
전북 동부	6,854	407,983	381,046	349,583	94,549	235,586	19,448
읍면부	3,715	210,614	81,985	202,395	178,434	17,989	5,972

전남 동부	4,432	259,320	244,730	228,315	66,199	147,992	14,124
읍면부	6,128	361,205	160,222	344,754	280,829	49,927	13,998
경북 동부	7,712	462,197	430,002	369,789	104,544	219,703	45,542
읍면부	8,185	476,639	248,108	444,801	330,083	90,354	24,364
경남 동부	10,082	606,722	581,987	458,204	128,963	285,327	43,914
읍면부	7,681	444,494	271,518	412,358	254,700	138,993	18,665
제주 동부	2,140	129,070	110,127	98,426	37,493	34,179	26,754
읍면부	830	48,457	20,732	43,168	37,781	630	4,757

<표 2-2> 지역충별 인구 및 교육정도 현황

	인구	남	여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체	45,560,399	22,349,928	23,210,471	6,243,117	5,221,524	14,749,212	10,405,948
서울	9,532,908	4,645,583	4,887,325	840,157	1,009,203	3,174,642	2,894,750
부산	3,423,791	1,663,297	1,760,494	429,349	470,605	1,172,396	772,191
대구	2,399,911	1,179,651	1,220,260	300,937	306,010	749,195	578,319
인천	2,451,704	1,210,185	1,241,519	261,593	293,172	928,329	461,767
광주	1,370,480	667,827	702,653	140,142	146,922	422,901	358,110
대전	1,396,860	687,629	709,231	152,183	152,107	431,742	370,074
울산	1,016,381	513,682	502,699	102,653	121,520	363,992	197,253
경기 동부	8,377,622	4,140,532	4,237,090	719,382	835,708	2,818,442	2,145,291
읍면부	1,705,424	851,035	854,389	290,430	198,031	581,446	275,158
강원 동부	863,056	423,997	439,059	127,997	105,247	280,960	174,773
읍면부	539,771	266,366	273,405	169,205	74,809	143,050	61,011
충북 동부	874,541	431,041	443,500	111,053	99,256	293,680	182,430
읍면부	523,409	258,119	265,290	169,641	66,792	140,834	56,798
충남 동부	679,630	336,726	342,904	79,918	71,041	230,282	140,460
읍면부	1,108,735	549,027	559,708	353,187	139,659	299,510	127,899
전북 동부	1,196,527	583,459	613,068	154,308	137,321	378,720	262,435
읍면부	516,200	242,429	273,771	223,423	66,532	109,184	44,138
전남 동부	765,200	378,272	386,928	100,932	91,025	241,054	151,147
읍면부	888,375	417,051	471,324	352,254	114,190	191,205	85,974
경북 동부	1,293,600	643,172	650,428	163,475	152,397	422,905	278,334
읍면부	1,184,253	568,766	615,487	417,468	156,371	291,238	138,429
경남 동부	1,769,100	878,386	890,714	187,995	214,476	612,900	370,246
읍면부	1,169,275	562,379	606,896	315,391	142,119	322,277	166,045
제주 동부	379,490	186,229	193,261	43,875	39,524	111,814	95,441
읍면부	134,156	65,088	69,068	36,169	17,487	36,514	17,475

2) 기타주택은 연립·다세대 및 기타주택 포함

<표 2-3> 지역층별 연령별 인구 현황

	0-14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전체	8,940,598	2,846,694	6,510,330	8,111,929	7,939,968	5,075,593	6,135,287
서울	1,614,156	592,747	1,672,166	1,767,391	1,622,253	1,157,455	1,106,740
부산	579,250	225,169	521,703	541,844	625,351	470,628	459,846
대구	465,450	164,976	353,851	415,077	432,258	278,295	290,004
인천	506,843	169,015	352,859	454,895	470,505	245,573	252,014
광주	302,405	95,866	219,665	242,942	225,729	137,062	146,811
대전	290,754	98,364	221,195	250,924	245,269	144,319	146,035
울산	230,963	68,081	131,730	195,192	199,947	106,487	83,981
경기 동부	1,858,799	538,505	1,168,864	1,705,901	1,550,306	758,876	796,371
읍면부	360,359	88,424	204,122	313,969	283,948	178,433	276,169
강원 동부	174,079	56,953	117,273	147,182	154,746	92,331	120,492
읍면부	91,696	25,342	51,295	73,198	89,346	70,531	138,363
충북 동부	188,122	62,437	132,356	155,619	154,998	85,658	95,351
읍면부	89,344	24,301	53,660	70,167	79,998	65,414	140,525
충남 동부	157,929	44,481	101,638	130,311	118,982	59,944	66,345
읍면부	188,480	57,070	121,091	150,887	164,378	141,232	285,597
전북 동부	263,743	82,452	166,491	204,746	201,384	130,006	147,705
읍면부	72,923	21,416	41,011	51,982	67,711	74,647	186,510
전남 동부	181,042	51,048	94,151	137,091	134,377	81,882	85,609
읍면부	144,752	38,210	71,888	103,651	119,438	117,197	293,239
경북 동부	276,489	84,651	183,336	236,147	232,031	140,291	140,655
읍면부	180,747	51,657	109,640	152,715	172,483	160,411	356,600
경남 동부	383,483	121,302	245,503	329,466	333,055	187,007	169,284
읍면부	223,443	53,662	108,664	189,072	178,952	139,756	275,726
제주 동부	88,836	24,046	53,087	71,787	62,858	36,707	42,169
읍면부	26,511	6,519	13,091	19,773	19,665	15,451	33,146

□ 추출된 조사구 교체

- 아래와 같은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에 응답자 부담경감 및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조사구로 교체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10% 표본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30가구 미만의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기존에 다른 통계 조사가 이루어졌던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통계청 경상조사
  - 농림어업인등 복지실태조사
  - 시군구고용통계조사
  - 지역통계
  - 2008년 가계신용조사
  - 2009년 가계신용조사

□ 부차모집단

- 서울, 6대 광역시, 중소도시<sup>3)</sup>, 읍면부 고려

2. 층화 및 분류지표

□ 층화

- 16개 시도 및 동부/읍면부를 고려한 25개 층

□ 분류지표 선정

- 2006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의 2,056 표본가구를 이용하여 주택특성, 연령대, 교육정도, 결혼상태의 특성별로 범죄피해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나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에 따른 범죄피해 경험이 차이가 있다는 유의한 결과가 있었으나 범죄피해의 발현빈도가 낮아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결과임
- 따라서 2008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분류지표를 참고하여 사용

<표 2-4> 내재적 층화 분류지표

1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주택유형(해당 유형이 구성비 높은 경우)</li> <li>①단독일반 ②단독다가구 ③소형아파트(41.91㎡미만)</li> <li>④중형아파트(85.8㎡미만) ⑤대형아파트(85.8㎡이상)</li> <li>⑥연립다세대 ⑦기타주택</li> </ul>
2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구성비</li> <li>①P33<sup>4)</sup>미만 ②P33~P66미만 ③P66이상</li> </ul>
3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정도(대졸 구성비)</li> <li>①P33<sup>5)</sup>미만 ②P33~P66미만 ③P66이상</li> </ul>
4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세 이상 노인구성비</li> <li>①P33미만 ②P33~P66미만 ③P66이상</li> </ul>
5차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구번호</li> </ul>

□ 내재적 층화

- 25개 지역 층별로 조사구를 <표 2-4>의 분류지표에 의해 정렬한 후에 지역별 표본규모에 해당하는 만큼을 확률비례계통추출

3)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동부지역

4) P33 : 33백분위수, p66 : 66백분위수

5) P33 : 33백분위수, p66 : 66백분위수

### 3. 표본규모 및 배분

#### □ 표본규모 검토

- 2006년도 조사의 표본규모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2,050가구이었으며 100개의 읍면동을 추출한 후에 각 읍면동에서 20 또는 21가구 조사
- 2006년도 조사에서 가구원에 대한 항목은 가구의 대표응답자에게만 물어보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표본가구 내 만 14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조사대상임(한 가구당 조사대상 가구원은 평균 2.1명이 될 것으로 예상)
- 2006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피해경험 항목의 목표정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면서 표본규모를 검토함

<표 2-5> 표본규모

범죄구분	2006년도 조사결과			상대오차	목표 절대오차	표본규모
	응답수	사례수	$\hat{p}$			
가구범죄	2050	126	6.15%	11.4%	0.7%	4,514
개인범죄	2050	49	2.39%	12.9%	0.31%	9,427

- 이때 표본규모는  $N$ 이 크므로 다음의 공식 사용

$$n = \left( \frac{z_{\alpha/2} \sqrt{\hat{p}(1-\hat{p})}}{d} \right)^2$$

- 여기서  $z_{\alpha/2}$ 는 1.96, 목표준편차  $S$ 는 2006년도  $\hat{p}$ 으로 추정,  $d$ 는 절대오차
- 예산상의 제약으로 약 4,500가구(약 9,450가구원)정도 조사 가능

#### □ 450개 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구당 10가구 조사

#### □ 표본배분

- 전국의 표본규모를 450개 조사구로 결정한 후 25개 층별로 조사모집단 분포의 가구 수에 비례배분과 제곱근 비례배분을 고려
- 제곱근비례배분 결과 및 업무량 배분을 고려하여 최종배분결과 도출

<표 2-6> 층별 표본배분

	조사구수	가구 수	%	비례배분	제공근비례	최종배분
전체	264,183	15,823,206	100	450	450	471
서울	54,541	3,309,699	20.9	94.1	45.9	96
광역시	68,557	4,093,408	25.9	116.4	122.3	114
중소도시	90,295	5,482,138	34.6	155.9	157.2	141
읍면부	50,790	2,937,961	18.6	83.6	124.7	120
서울	54,541	3,309,699	20.9	94.1	45.9	96
부산	20,042	1,185,403	7.5	33.7	27.5	27
대구	13,382	814,583	5.1	23.2	22.8	21
인천	14,047	815,376	5.2	23.2	22.8	21
광주	7,509	460,089	2.9	13.1	17.1	15
대전	8,017	478,862	3.0	13.6	17.5	15
울산	5,560	339,095	2.1	9.6	14.7	15
경기 동부	44,939	2,757,337	17.4	78.4	41.9	30
읍면부	10,005	571,728	3.6	16.3	19.1	18
강원 동부	5,296	315,403	2.0	9.0	14.2	15
읍면부	3,576	205,222	1.3	5.8	11.4	12
충북 동부	5,004	307,283	1.9	8.7	14.0	15
읍면부	3,425	197,918	1.3	5.6	11.2	12
충남 동부	3,836	236,823	1.5	6.7	12.3	12
읍면부	7,245	421,684	2.7	12.0	16.4	15
전북 동부	6,854	407,983	2.6	11.6	16.1	15
읍면부	3,715	210,614	1.3	6.0	11.6	12
전남 동부	4,432	259,320	1.6	7.4	12.8	12
읍면부	6,128	361,205	2.3	10.3	15.2	15
경북 동부	7,712	462,197	2.9	13.1	17.2	15
읍면부	8,185	476,639	3.0	13.6	17.4	15
경남 동부	10,082	606,722	3.8	17.3	19.7	18
읍면부	7,681	444,494	2.8	12.6	16.8	15
제주 동부	2,140	129,070	0.8	3.7	9.1	9
읍면부	830	48,457	0.3	1.4	5.6	6

#### 4. 표본 조사구내 가구선정

□ 조사구 경계확인 및 요도보완

- 표본조사구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경계확인
- 확인된 경계 및 주요 지형지물 표시 확인 및 수정보완

- 거처번호 부여 및 가구명부 작성
  - 요도 보완과 동시에 조사 순서대로 상호 인접되게 거처번호 부여
  - 부여된 거처번호에 맞게 가구명부 작성
  
- 표본조사구내 가구 선정
  - 조사구내 임의의 시작가구<sup>6)</sup>로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가구를 조사
  - 조사구 사전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 표본조사구로 대체
  
- 조사구역 확정 및 조사 실시
  - 조사구별 시작가구로부터 10가구 조사

## 5. 조사표본수

- 총 성공 가구 수: 4,710가구
- 총 성공 개인 수: 10,671명
- 총 투입 면접원 수 : 총 216명

<표 2-7> 개편 범취피해조사(2008) 조사목표표본 수 및 실사성공 수

	조사구	가구	가구원(개인)
목표표본	450	4,500	9,450
성공표본	471	4,710	10,671
목표대비	104.5%	104.5%	112.9%

6) 조사구별 부여된 시작가구번호를 사용

### Ⅲ. 조사표 구성 및 내용

#### 1 조사표의 종류

2008 범죄피해조사의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가구범죄와 개인범죄를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하여 가구주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로 나뉜다. 또한 그 각각은 다시 범죄피해여부와 피해횟수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조사표와 범죄피해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조사표로 나뉜다. 즉, 범죄피해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 (1) 기초조사표 - 가구주용
- (2) 기초조사표 - 가구원용
- (3) 사건조사표 - 가구주용
- (4) 사건조사표 - 가구원용

#### 2. 조사항목과 주요 내용<sup>7)</sup>

##### 1) 기초조사표 (가구주용을 중심으로)

- 개별고유번호: 조사 가구번호와 연결하여 하위번호 1번 부여
- 가구 특성 : 조사구 특성, 주택유형, 세대구성, 그리고 총 조사대상 부수 및 조사방법 등을 조사원이 파악하여 직접 기록함.
- 가구원 명부(가족사항) : 가구원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가구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인척 모두를 포함하며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도 포함함. 이들 가구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유형, 종사상 지위, 장애유무 및 유형, 외국인의 경우 출신국가 등을 조사함.
- 일상생활에서의 두려움 :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건강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양한 차원에서 조사함. 구체적으로 ① 범죄발생추세 예측, ②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 인지적, 행태적 측면), ③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이타적 관점) 정도, ④ 9가지 범죄유형별(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손괴, 주거침입, 괴롭힘(스토킹), 신용도용) 두려움
- 주변 환경과 집합효율성 : 범죄발생의 상황적·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설문요인으로 ① 동네·이웃관계, ② 이웃과의 접촉정도, ③ 동네의 무질서 분위기, ④ 동네의 범죄예방활동, 나아가 ⑤ 동네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등을 종합하여 집합 효율성을 평가함.
- 범죄피해여부에 관한 회상 질문 : 사기, 절도, 폭행(상해), 강도(협박), 괴롭힘(스토킹), 성폭력 등 주요 지표범죄(Index Crime) 피해를 겪었는지, 몇 번의 범죄피해가 있었는지, 범죄유형과 사건 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총 18개 스크리닝 질문으로 자극함. 이번 조사표에서는 자극응답자의 기억 능력과 관련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수법, 피해품, 발생장소, 공격방법, 가해자유형 등 다차원적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함. 특히 가구주 조사표

7)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표]를 참조하기 바람

에서는 “주거침입”과 “가구에 대한 손괴범죄” 피해여부를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도록 함.

- 회상 질문을 통한 범죄피해 유형 및 수에 관한 체크 리스트 : 【문10】번부터 【문18】번까지 모두 응답이 끝난 경우, 응답자의 범죄피해경험 유무와 횟수를 각 문항별로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만일 【문10】번부터 【문18】번까지의 문항에서 한번이라도 피해경험(미수 사건포함)이 있다면 그 총 횟수만큼 『사건 조사표』를 작성함.
- 보이스 피싱 및 신용도용 피해여부(2009년 특별조사주제) : 최근 신중범죄수단의 하나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과 신용도용 피해사례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그 발생율과 양상, 피해심각성 등을 조사함.
- 가구의 생활안정성 : 가구의 현 동네거주기간, 거주지의 영업활동여부,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이사 횟수 및 이사 이유, 주택소유여부, 월평균 소득 등을 통하여, 생활 안정성 정도를 가구주를 통하여 조사함. 소득계산의 시점은 조사시점의 지난 1년간의 월평균 총수입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이전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함.
- 가구의 범죄취약성 : 평소 1일 평균 집이 비어있는 시간, 주택의 방범설비 등 범죄예방조치나 활동 정도
- 개인의 범죄취약성 : 외출 시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 늦은 귀가횟수, 인터넷을 통한 일상 활동 및 사용빈도, 일상생활 중 법 준수 정도 등으로 측정함.

<표 3-1> 기초조사표의 세부적인 조사항목

1. 기초 조사표의 세부적인 조사항목		가 구 주	가 구 원
가구 특성	개별고유번호(지역번호+가구번호+가구원번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조사구특성	<input type="radio"/>	
	주택유형	<input type="radio"/>	
	세대구성	<input type="radio"/>	
	총 조사부수 : 기초조사표 및 사건조사표	<input type="radio"/>	
	조사방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구원 명부	가족 관련사항*(가구주만 해당)	<input type="radio"/>	
	- 인식번호	<input type="radio"/>	
	- 가구주와의 관계	<input type="radio"/>	
	- 성별	<input type="radio"/>	
	- 연령(만 나이)	<input type="radio"/>	
	- 혼인상태	<input type="radio"/>	
	- 직업 및 종사상 지위	<input type="radio"/>	
	- 장애유무 및 유형	<input type="radio"/>	
- 외국인의 경우, 출신국가	<input type="radio"/>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의 양적 변화추세 예측(발생추세 인지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범죄에 대한 두려움(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행태적 측면)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타적 관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가지 범죄유형별 두려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집합 효율성	동네이웃과의 관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동네의 무질서 분위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동네의 범죄예방활동</p> <p>이웃과의 접촉정도</p> <p>동네의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p>	○	○
피해 여부 회상 질문	<p>속임을 당하여 금품 및 재산상의 피해여부</p> <p>- 소비자 사기여부 및 회수</p> <p>- (언급사건 제외) 채무빙자 사기여부 및 회수</p> <p>- (언급사건 제외) 부동산 사기여부 및 회수</p> <p>- (언급사건 제외) 알선 사기여부 및 회수</p> <p>- (언급사건 제외) 구직 사기여부 및 회수</p> <p>- (언급사건 제외) 투자 사기여부 및 회수</p> <p>- (언급사건 제외) 신용카드 사기여부 및 회수</p> <p>- (언급사건 제외) 위조관련 피해여부 및 회수</p> <p>- (언급사건 제외) 무전취식 등 피해여부 및 회수</p>	○	○
	<p>도난여부(도난물품 및 회수)</p> <p>(언급사건제외) 주거침입여부(및 회수)* 가구주만 해당</p> <p>(언급사건제외) 손괴피해여부(침 회수)* 가구주만 해당</p> <p>(언급사건제외) 도난/폭행/위협당한 장소여부(장소 및 회수)</p> <p>(언급사건제외) 폭행/위협당한 방법여부(방법 및 회수)</p> <p>(언급사건제외) 괴롭힘(스토킹) 피해경험여부(경험내용 및 회수)</p> <p>(언급사건제외) 아는 사람에 의한 도난/폭행/위협/괴롭힘 여부(회수)</p> <p>(언급사건 제외) 성적 괴롭힘 피해경험(가해자유형 및 회수)</p>	○	○
'08 범죄 피해 조사 특별 주제	<p>보이스 피싱</p> <p>- 수신경험 여부</p> <p>- 피싱 방법 및 경험횟수</p> <p>- 경로매체</p> <p>- 송금 및 개인정보제공 횟수</p> <p>- 재산상 손실 피해액</p> <p>- 손해발생하지 않은 이유</p> <p>신용도용(identity theft)</p> <p>- 피해경험여부</p> <p>- 도용방법 및 횟수</p> <p>- 피해사실 인지경로</p>	○	○
개인적 특성 및 일상 활동	<p>안정성*(가구주만 해당)</p> <p>- 현 동네거주기간</p> <p>- 거주지에서의 영업활동여부 및 표식여부</p> <p>- 5년 이내 이사 횟수 및 이사 이유</p> <p>주택 소유여부*(가구주만 해당)</p> <p>가구 소득*(가구주만 해당)</p> <p>교육 정도</p> <p>일상 활동</p> <p>- 외출 시 주된 교통수단</p> <p>- 늦은 귀가빈도</p> <p>- 집을 비우는 시간정도*(가구주만 해당)</p> <p>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조치나 활동정도*(가구주만 해당)</p> <p>인터넷을 통한 일상활동 및 사용빈도</p> <p>일상생활 중 법 준수 정도(일탈성향)</p>	○	○

## 2) 사건조사표(가구주용을 중심으로)

- 개별고유번호: 조사가구 및 가구주번호와 연결하여 하위연번 부여
- 점검 항목: 기초조사표에서 사건 보고할 범죄피해 유형을 다시 한번 응답자에게 확인하여, 개별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응답자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점검함. 또한 보고할 사건이 현 주소지에서 사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 또는 이전 거주지에 사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본 사건이 “연속범죄(가령, 가정폭력, 학교폭력, 스토킹과 같은 사건사례들의 경우처럼, 동일가해자로부터 범행수법이 반복패턴을 가지고 사건이 지속적 발생한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함.
-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해당 사건의 발생 일시 또는 기간, 발생시간, 발생지역 및 구체적인 발생장소를 조사함.
- 사기피해 여부: 그 사건에서 사기피해가 있었는지, 구체적 피해유형(소비자사기, 채무빙자 사기, 부동산 사기, 알선사기, 구직사기, 신용카드 사기 등)과 수법 등을 조사함
- 주거침입 여부: 그 사건에서 가구에 대한 침입이 있었는지(미수 포함), 있었다면, 침입방법은 어떠한지, 그 사건 발생당시 가족 중 누군가가 현장에 있었는지,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등을 조사함.
- 범행수법 : 그 사건의 범죄유형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① 무기 등의 소지·사용여부, ② 신체적인 공격여부, ③ 신체적 공격(미수 포함)없는 사건의 범행수법(절도/강도/강도미수/단순협박/주거침입/자동차침입/재물손괴/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사이버 명예훼손), ④ 신체공격사건의 범행내용 등을 모두 파악하여 정리함.
- 신체 피해 및 상해로 인한 비용: 그 사건에서 ① 신체피해를 겪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신체피해 형태는 무엇인지, ② 상처를 어디에서 치료나 검사를 했는지, ③ 만일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입원 일수, 의료적 처치 총비용, ④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 중단경험여부 및 그 일수(시간손실), ⑤ 가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보상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조사함.
- 피해자 대응 및 반응 : 범죄자-피해자간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문항으로서, 분석결과는 향후 범죄예방책 및 대응방법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설문문항들은 ① 그 사건의 발생 당시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② 함께 있던 사람 중 상해, 위협, 강도 피해여부 및 그 수(가족 수), ③ 사건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 여부, ④ 보호를 위한 대응행동을 했는지 여부, 만일 했다면, 구체적인 대응행동 유형(방법)은 무엇인지, 만일 무기사용이나 폭력적 대응을 했을 경우, 먼저 시작한 사람은 누구인지, ⑤ 이러한 대응행동을 한 시점은 상해피해이전인지 혹은 이후인지, ⑥ 대응행동의 효과(영향)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함.
- 가해자 특성 : ① 그 사건의 가해자(범인)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 알고 있다면, 그 인지경로는 무엇인지, ② 가해자의 유형, ③ 가해자 수, ④ 가해자 성별, ⑤ 가해자 연령대(주된 역할 기준), ⑥ 가해자 음주여부, ⑦ 가해자-피해자 관계, ⑧ 가해자의 범행이유 등을 조사하여 파악함.
- 재산 피해 : 그 사건에서 ① 재산피해가 있었는지(미수 포함)를 우선 파악함. ② 재산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 ③ 그 사건의 피해물품 유형 및 사용절도 여부, ④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도 함께 재산피해를 입었는지, 있었다면, 총 피해자 수, ⑤ 범인과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물품 종류, ⑥ 그 사건 피해품의 현금가치,

⑦ 피해품 회수여부 및 정도 등을 조사함. 특히 가구주에게는 그 사건에서 재산손괴 피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피해물품의 종류, 손괴물품의 현금가치, 손괴물품의 피해배상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 정신적 피해와 그에 따른 비용 : 응답자가 ①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조사함. ② 나아가 심리상담 및 신경정신과 치료경험 여부 및 치료기간, 치료비용, ③ 사건이 일상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정도, ④ 사건경험이후 재피해예방을 위한 행동변화 정도, ⑤ 사건경험이후 범죄피해 두려움 변화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함.
- 경찰신고 처리현황 : 그 사건을 ① 경찰에 신고하였는지를 묻고, 만일 신고하였다면, 신고이유, 경찰의 조치,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범인검거여부, ②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 ③ 사건처리(사법처리협조 및 물건수리·교체 등)로 인한 시간손실여부 및 손실정도, 등을 조사함.
- 사건경험으로 인한 전반적인 정서변화 : 사건피해 및 사건처리과정을 겪으면서 갖게 된 자존감, 자신감, 사람에 대한 신뢰감, 경찰 신뢰감,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감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서적 지표를 측정함.

<표 3-2> 사건조사표의 세부적인 조사항목

2. 사건 조사표의 세부 조사항목		가 구 주	가 구 원
점검 항목	개별사건 인식번호(지역번호+가구번호+가구원번호+사건번호) 사건 보고할 범죄피해유형 확인/점검 현 주소지에서 사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 여부 2008년 한 해 동안 본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발생 횟수 - 해당 범죄의 순서(첫번째, 두 번째... 등) - 연속범죄 판단여부(동일반복패턴 여부 및 구분가능성 여부)	○ ○ ○ ○ ○ ○	○ ○ ○ ○ ○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사건 발생 년 월(혹은 기간) 발생시간 발생지역 - 발생지역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동일한 시/군인가? 발생장소	○ ○ ○ ○ ○	○ ○ ○ ○ ○
사기 피해 여부	사기피해(미수 포함) 경험여부 - 구체적인 피해유형 - 소비자 사기의 경우, 속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알선 사기의 경우, 유인동기 및 계기 - 신용카드 사기의 경우, 피해양상 - 사기수법 - 재물의 교부방식	○ ○ ○ ○ ○ ○ ○	○ ○ ○ ○ ○ ○ ○
주거 침입 여부	침입여부(미수 포함) 및 침입방법*(가구주만) 사건발생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누가 있었는가?*(가구주만)	○ ○	
범행 수법	무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여부 - 무기의 종류 - 사전준비 여부 신체적 공격여부(미수 포함) (신체적 공격은 실제로 없었고 시도된 적이 없는) 사건의 발생내용 - 절도/강도/협박/침입/재물손괴 - 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사이버명예훼손	○ ○ ○ ○ ○ ○	○ ○ ○ ○ ○ ○

	(신체적 공격이 시도된 적이 있는) 사건의 발생 내용 (신체적 공격이 실제 있었던) 사건의 발생 내용 - 신체공격전 가해자의 위협여부	○	○
신체 피해	신체피해여부 및 피해 유형 상처치료여부 및 치료 장소 -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입원 일수 - 의료적 처치 총비용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 중단경험여부 및 그 일수(시간손실) 가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보상여부 및 그 정도	○	○
피해자 대응 및 반응	사건발생 당시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 함께 있던 사람 중 상해, 위협, 강도 피해여부 및 그 수(가족 수) 사건당시 피해자의 음주상태 여부 보호를 위한 대응행동 여부 - 대응행동 유형(방법) - 무기사용 및 폭력적 대응의 경우, 먼저 시작한 사람 - 상해피해를 기준으로 대응행동의 시점 - 대응행동의 효과(영향)	○	○
가해자 특성	가해자(범인)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가해자의 유형 - 가해자 수 - 가해자 성별 - 가해자 연령대(주된 역할 기준) - 가해자 음주여부 - 가해자-피해자 관계 가해자의 범행이유(추정)	○	○
재산 피해	재산피해여부(미수 포함) - 사건발생 후 피해인지 시점 피해물품 유형 - 사용절도 여부 본 사건으로 재산피해 입은 다른 사람의 존재여부 및 그 수 범인과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물품 종류 피해품의 현금가치 피해품 회수여부 및 정도 재산손괴여부 및 그 종류*(가구주만 해당) - 손괴물품의 현금가치 - 손괴물품의 피해배상 여부	○	○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 여부 및 그 유형 심리상담 및 신경정신과 치료경험 여부 및 치료기간, 치료비용 사건이 일상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정도 사건경험이후 재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변화 정도 사건경험이후 범죄피해 두려움 변화정도	○	○
경찰 신고 처리 현황	경찰신고 여부 - 신고이유 - 경찰의 조치 -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범인검거여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 사건처리로 인한 시간손실여부 및 손실정도 사건경험 전후의 정서변화 정도	○	○

## IV. 자료수집방법

### 1. 조사과정

#### □ 조사 기간

- 예비조사 : 2009년 7월 6일 ~ 10일(5일간)
- 본 조사 : 2009년 9월 14일 ~ 23일(10일간)
- 본 조사 보완조사 및 오류검토 : 2009년 9월 30일~ 10월 30일
- \* 2009년 9월 23일 실사 종료후 에어표본 보완을 위한 추가조사 진행

#### □ 조사수행 체계

- 본 연구원의 연구팀은 전체 조사기획 및 준비단계에서 설문설계, 조사지침서, 내검규칙 등 조사수행전략을 수립함. 특히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를 받기 위하여, 통계청 관련부서와의 업무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표본설계과의 협조하에 표집 틀과 표본설계를 진행함
- 자료수집단계에서는 통계청 조사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방통계사무소 등을 통하여 면접원을 선발, 면접원 교육 등 실사 및 자료검증이 수행됨.
- 자료처리단계에서는 온라인 [범죄피해조사관리입력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데이터집적 및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고, 여기에서 집적된 데이터에 대하여 전문통계분석(SPSS)를 결과분석을 수행함



<그림 4-1> 범죄피해조사 흐름도

## 2. 실사과정

### □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 교육

- 교육일자 : 2009. 9. 7. ~ 9. 9. (3일간)
- 교육장소 : 전국의 15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합동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지방청/사무소 담당직원, 슈퍼바이저(24명), 조사원(183명), 예비조사원(9명)
- 교육교재 :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지침서 및 조사표

**<표 4-1>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교육일정 및 지역별 대상인원**

교육장소	교육일자	교육대상 (지방청/사무소)	인원 (명)	조사원		
				조사원	슈퍼바이저	예비조사원
경인지방청 (서울)	9. 7(월)	경인	41	32	6	3
		의정부	3	3		
		구리	2	2		
		고양	1	1		
인천사무소	9. 8(화)	인천	9	7	1	1
		부천	2	2		
수원사무소	9. 9(수)	수원	5	4		1
		성남	2	2		
		화성	2	2		
		평택	1	1		
		이천	3	3		
동북지방청 (대구)	9. 7(월)	동북	11	8	2	1
		경산	1	1		
		구미	2	2		
		안동	2	2		
춘천사무소	9. 8(화)	상주	2	2		
		춘천	6	5	1	
		원주	2	2		
강릉사무소	9. 7(월)	영월	2	2		
		강릉	2	2		
		삼척	1	1		
포항사무소	9. 7(월)	포항	3	3		
		울진	2	2		
호남지방청 (광주)	9. 9(수)	호남	12	9	2	1
		순천	2	2		
		여수	2	2		
		목포	2	2		
		강진	2	2		
		해남	1	1		
		보성	2	2		
전주사무소	9. 9(수)	전주	5	4	1	
		군산	4	3	1	
		정읍	1	1		

		남원	1	1		
		진안	2	2		
제주사무소	9. 9(수)	제주	6	5	1	
동남지방청(부산)	9. 8(화)	동남	12	9	2	1
울산사무소	9. 7(월)	울산	6	5	1	
창원사무소	9. 9(수)	창원	7	5	1	
		김해	5	4	1	
진주사무소	9. 8(화)	진주	2	2		
		합천	2	2		
충청지방청 (대전)	9. 8(화)	충청	11	8	2	1
		천안	5	4	1	
		보령	1	1		
		서산	3	3		
		홍성	1	1		
		옥천	1	1		
		청주	6	5	1	
		충주	4	4		
증평	2	2				

#### □. 면접방법

-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조사표로 대상자를 면접조사
- 면접원이 조사요도를 활용하여 해당가구 방문(지역개발 등으로 요도가 불분명할 경우는 세부 주소 활용)
- 조사 대상가구에 적격대상자(만 14세이상 남녀)가 집에 있는지 확인
- 적격대상자가 집에 있을 경우는 조사 협조를 구하고, 없을 경우는 조사시행에 대한 메모를 남겨두고 추후 다시 방문
- 조사 소요시간 설명 후 조사지침서(매뉴얼)에 기초하여 설문 실시
- 누락 부분을 발견하거나 상식적으로 어긋난 부분 등의 경우가 있는지 등을 질문을 하여 완성도 높임.
- 응답자 사례품 증정
- 응답된 통계는 여성가족관련 정책 입안에 유용하게 이용된다고 설명
- 감사 인사와 향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를 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림, 본 조사가 패널조사라는 점을 상기시킨 후 다음 목적지로 이동

#### □. 조사구 대체 현황

- 전체 471개의 기존 표본 조사구 중 8개 조사구 교체  
 ※ 서울(1), 경기(1), 전북(1), 제주(1), 울산(3), 대전(1)

<표 4-2>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구 대체 현황

번 연	구분 형 유	기존 표본 조사구			대체 및 추가 조사구			비 고
		조사구 번호	지 역		조사구 번호	지 역		
1	대체	1108062026	서울	성북구 정능1동	1108061096	서울	성북구 보문동	재개발 지역 2009.9.11.교체
2	대체	3101264090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310126408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재개발 지역 2009.9.10.교체
3	대체	3502040024	전북	군산시 옥서면	3503011001	전북	익산시 함열읍	통계청 경상조사 표본, 2009.9.2.교체
4	대체	3901054119	제주	제주시 이도2동	3901054211	제주	제주시 이도2동	재개발 지역 2009.9.10.교체
5	대체	2601064051	울산	중구 약사동	2602052105	울산	남구 신정2동	집단 불응 2009.9.17.교체
6	추가	2602057145 (2가구조사)	울산	남구 삼산동	2602057153 (8가구조사)	울산	남구 삼산동	집단 불응 2009.9.17.교체
7	대체	2603056034	울산	동구 전하2동	2603056037	울산	동구 전하2동	재개발 지역 2009.8.20.교체
8	대체	2501058031	대전	동구 대신동	2501057095	대전	동구 용운동	재개발 지역 2009.9.10.교체

□. 가구 대체현황

- 조사결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추출된 전국 4,710가구 중 1,211가구가 가구 가 살지 않는 빈집이거나 조사기간 중 장기부채 등의 불능사유로 대체되었고, 559가구가 조사에 불응함.
- 불응률은 서울·경기지역이 15.4%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강원지역이 6.9%로 가장 낮음.

<표 4-3>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가구 대체 현황

(단위 : 가구, %)

조사지역	조사기관	접촉 가구수	대상 가구수	불응 가구수	불능 가구수	가구 대체율	불응 가구율
계	전 국	6,480	4,710	559	1,211	27.3	10.6
서울	경인지방통계청	1,639	960	206	473	41.4	17.7
인천	인천통계사무소	273	210	38	25	23.1	15.3
수원,안양,용인	수원통계사무소	121	110	9	2	9.1	7.6
광주,성남	성남통계사무소	75	60	10	5	20.0	14.3
의정부,양주,포천	의정부통계사무소	79	60	10	9	24.1	14.3
부천,광명,시흥	부천통계사무소	71	60	10	1	15.5	14.3
평택	평택통계사무소	36	30	1	5	16.7	3.2
고양	고양통계사무소	41	30	6	5	26.8	16.7
구리,가평,남양주	구리통계사무소	51	40	8	3	21.6	16.7
이천,양평,여주	이천통계사무소	46	40	1	5	13.0	2.4
화성,안산	화성통계사무소	61	50	1	10	18.0	2.0

소 계	서울·경기	2,493	1,650	300	543	33.8	15.4
대구	동북지방통계청	278	220	21	37	20.9	8.7
포항,경주	포항통계사무소	112	80	17	15	28.6	17.5
안동,영주	안동통계사무소	50	50	0	0	0.0	0.0
구미,김천	구미통계사무소	60	50	0	10	16.7	0.0
상주,문경,예천	상주통계사무소	47	40	2	5	14.9	4.8
경산	경산통계사무소	26	20	1	5	23.1	4.8
영덕,울진	청송통계사무소	59	50	2	7	15.3	3.8
춘천,양구,철원,홍천	춘천통계사무소	110	90	5	15	18.2	5.3
원주	원주통계사무소	62	50	3	9	19.4	5.7
강릉	강릉통계사무소	74	60	1	13	18.9	1.6
동해	삼척통계사무소	38	30	1	7	21.1	3.2
영월,정선	영월통계사무소	69	40	5	24	42.0	11.1
소 계	대구·경북·강원	985	780	58	147	20.8	6.9
광주,나주,영광,장성,화순	호남지방통계청	282	220	23	39	22.0	9.5
목포	목포통계사무소	58	50	0	8	13.8	0.0
순천,구례	순천통계사무소	44	40	4	0	9.1	9.1
여수,광양	여수통계사무소	56	40	11	5	28.6	21.6
영암,장흥	강진통계사무소	41	30	0	11	26.8	0.0
해남	해남통계사무소	12	10	0	2	16.7	0.0
보성,고흥	보성통계사무소	34	30	1	3	11.8	3.2
전주,김제,완주	전주통계사무소	124	100	9	15	19.4	8.3
군산,익산	군산통계사무소	129	90	6	33	30.2	6.3
정읍,고창,부안	정읍통계사무소	42	30	2	10	28.6	6.3
남원	남원통계사무소	14	10	2	2	28.6	16.7
무주,장수	진안통계사무소	50	40	1	9	20.0	2.4
제주,서귀포	제주통계사무소	176	150	4	22	14.8	2.6
소 계	광주,전라,제주	1,062	840	63	159	20.9	7.0
부산	동남지방통계청	364	270	28	66	25.8	9.4
울산	울산통계사무소	197	150	22	25	23.9	12.8
창원,마산,진해	창원통계사무소	161	130	6	25	19.3	4.4
진주,남해,하동	진주통계사무소	40	40	0	0	0.0	0.0
김해,밀양,양산	김해통계사무소	146	110	19	17	24.7	14.7
합천,창녕	합천통계사무소	69	50	1	18	27.5	2.0
소 계	부산·울산·경남	977	750	76	151	23.2	9.2
대전,계룡,공주,금산,논산,연기	충청지방통계청	284	220	13	51	22.5	5.6
천안,아산	천안통계사무소	161	110	20	31	31.7	15.4
부여	보령통계사무소	42	30	1	11	28.6	3.2
서산,당진	서산통계사무소	61	50	1	10	18.0	2.0
홍성	홍성통계사무소	13	10	0	3	23.1	0.0
청주,진천,청원	청주통계사무소	205	150	4	51	26.8	2.6
충주,단양,제천	충주통계사무소	124	70	2	52	43.5	2.8
영동	옥천통계사무소	13	10	2	1	23.1	16.7
음성	증평통계사무소	60	40	19	1	33.3	32.2
소 계	대전·충청	963	690	62	211	28.3	8.2

※ 가구대체율 = (불용가구수+불능가구수)/(접촉가구수)%

불용가구율 = (불용가구수)/(접촉가구수-불능가구수)%

□. 무응답률

- 조사된 4,710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는 10,780명이며, 그 중 109명(1.01%)이 불응, 장기부재, 장애 등의 사유로 무응답함.
- 무응답사유로 조사불응 45%, 장기부재 22.9%, 장애로 인한 불응 26.6%, 기타 5.5%를 차지
- 응답한 10,671명의 가구원 중 3명이 기초조사표만 작성하고 사건조사표를 불응하여 일부완결이 3건 발생

<표 4-4> 2008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무응답 현황

(단위 : 가구, 명)

행정구역	가구수	가구원수	무응답 사유						
			응답자 수	무응답자 수	무응답률	1.조사 불응	2.조사 불응 (장기 부재)	3.조사 불응 (장애)	4.기타
전체	4,710	10,780	10,671	109 (100%)	1.01%	49 (45.0%)	25 (22.9%)	29 (26.6%)	6 (5.5%)
서울특별시	960	2,348	2,308	40	1.70%	28	8	3	1
부산광역시	270	631	629	2	0.32%	2	-	-	-
대구광역시	210	501	501	-	0.00%	-	-	-	-
인천광역시	210	483	476	7	1.45%	1	3	3	-
광주광역시	150	367	363	4	1.09%	3	-	1	-
대전광역시	150	341	341	-	0.00%	-	-	-	-
울산광역시	150	353	353	-	0.00%	-	-	-	-
경기도	480	1,142	1,139	3	0.26%	1	-	2	-
강원도	270	519	512	7	1.35%	1	2	2	2
충청북도	270	611	605	6	0.98%	1	2	2	1
충청남도	270	571	556	15	2.63%	6	4	4	1
전라북도	270	659	651	8	1.21%	-	2	6	-
전라남도	270	566	555	11	1.94%	4	3	3	1
경상북도	300	647	645	2	0.31%	-	-	2	-
경상남도	330	717	716	1	0.14%	-	-	1	-
제주특별자치도	150	324	321	3	0.93%	2	1	-	-

□.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 지도

- 본 조사기간 3차에 걸쳐 현장조사진척률 파악
- 현장조사 실사지도기간 : 2009. 9. 14. ~ 9. 23.
- 실사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40가구 이상의 표본이 할당된 전국 41개 지역 지방청/사무소별로 실사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음.

- 조사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회수된 조사표의 완성도 점검 및 내용검토 지도, 조사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파악함
- 시스템 입력·내검지도 기간 : 2009. 9. 28. ~ 9. 30.
- 슈퍼바이저가 채용된 15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조사표를 중심으로 eye-check, 입력 및 내용검토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입력 후 즉시 오류사항을 확인하여 직접 조사가구에 확인토록 수정지도
- 최종 입력내용 검토 : 조사입력시스템에 오류/점검 코드를 추가 입력하여 오류가 발견된 조사표에 대하여 조사표 내용을 직접 확인, 입력오류 여부 파악
- 입력오류인 경우 내용을 재입력하고, 조사표 작성이 잘못된 경우 해당가구 또는 해당가구를 담당할 조사원에게 직접 전화 확인하여 조사표 수정 및 보완

## V. 가중치 부여방법

### □ 가중치 작성

-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적용의 3단계를 거침<sup>8)</sup>
-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조사구내 가구 수를 크기 척도로 사용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

$$w_h^0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 \frac{S_h}{n_h \times m_{hi}}$$

- $h$  : 지역을 나타내는 첨자 ( $h = 1, 2, \dots, 25$ )
  - $i$  : 표본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 $i = 1, 2, \dots, n_h$ )
  - $S_h$  : 표본추출에 사용된 크기 척도(설계당시 가구 수)
  - $M_{hi}$  :  $h$ 지역,  $i$  번째 표본조사구내 전체 가구 수
  - $n_h$  :  $h$ 지역 내 표본조사구 수
  - $m_{hi}$  :  $h$ 지역,  $i$  번째 조사구내 표본 가구 수( $m_{hi}=10$ )
- 무응답 조정은 응답률의 역수를 이용하여 응답가구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사용
  - 본 조사의 경우 16개시도별 추출률이 상이하고 기본적으로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인구 표본은 모집단인구와도 일정한 차이가 있음 이에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추정량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벤치마크 모집단(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활용)의 분포에 맞게 사후층화가중치 부여

$$w_{h,g} = w_h^0 \times \frac{X_{h,g}}{\hat{X}_{h,g}}$$

- $X$  : 모집단 추정치
  - $\hat{X}$  : 표본에서 조사된 가구의 총 가중값
  - $g$  : 성별 연령별 그룹
- 사후층화가중치에 있어서 가구가중치와 가구원가중치 등 두 가지 고려함. 가구가중치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사용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이고, 가구원가중치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사용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임.

8) 가중치는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모집단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표본단위에 부여하는 승수이며 사후층화가중치는 응답가구의 가중된 표본분포가 최신의 벤치마크 모집단 분포와 같게 되도록 조정된 가중치

- 가구가중치는 모집단의 지역별, 주택유형별(단독/아파트/기타)로 모집단 분포 고려
- 가구원가중치는 지역별, 성별(남/여), 연령별(14~29세/30~49세/50세 이상)로 모집단 분포 고려. 극단가중치의 경우 사후 층의 인접 셀과 병합하여 가중치 조정

<표 5-1> 가구표본과 모집단의 지역 분포 비교

		관찰수치		모집단		가중치 적용 비율	
		빈도	비율	모수	비율		
지역	서울특별시	960	20.4	3,309,699	20.9	21.0	
	부산광역시	270	5.7	1,185,403	7.5	7.5	
	대구광역시	210	4.5	814,583	5.1	5.1	
	인천광역시	210	4.5	815,376	5.2	5.2	
	광주광역시	150	3.2	460,089	2.9	2.9	
	대전광역시	150	3.2	478,862	3.0	3.0	
	울산광역시	150	3.2	339,095	2.1	2.1	
	경기도	480	10.2	3,329,065	21.0	20.9	
	강원도	270	5.7	520,625	3.3	3.3	
	충청북도	270	5.7	505,201	3.2	3.1	
	충청남도	270	5.7	658,507	4.2	4.1	
	전라북도	270	5.7	618,597	3.9	3.9	
	전라남도	270	5.7	620,525	4.0	4.2	
	경상북도	300	6.4	938,836	5.9	5.9	
	경상남도	330	7.0	1,051,216	6.6	6.6	
	제주도	150	3.2	177,527	1.2	1.2	
		소계	4710	100.0	15,823,206	100.0	100.0

<표 5-2>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지역 분포 비교

		관찰수치		모집단		가중치비 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역	서울특별시	2308	21.6	9,532,908	20.9	21.4	
	부산광역시	629	5.9	3,423,791	7.5	7.7	
	대구광역시	501	4.7	2,399,911	5.3	5.2	
	인천광역시	476	4.5	2,451,704	5.4	5.3	
	광주광역시	363	3.4	1,370,480	3.0	2.9	
	대전광역시	341	3.2	1,396,860	3.1	3.0	
	울산광역시	353	3.3	1,016,381	2.2	2.1	
	경기도	1139	10.7	10,083,046	22.1	21.4	
	강원도	512	4.8	1,402,827	3.1	3.1	
	충청북도	605	5.7	1,397,950	3.1	3.1	
	충청남도	556	5.2	1,788,365	3.9	4.0	
	전라북도	651	6.1	1,712,727	3.8	3.8	
	전라남도	555	5.2	1,653,575	3.6	3.9	
	경상북도	645	6.0	2,477,853	5.4	5.6	
	경상남도	716	6.7	2,938,375	6.4	6.4	
	제주도	321	3.0	513,646	1.1	1.1	
		소계	10671	100.0	45,566,399	100.0	100.0

<표 5-3>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성별 분포 비교

		관찰수치		모집단		가중치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112	47.9	22,349,928	49.0	48.5
	여자	5559	52.1	23,210,471	51.0	51.5
	소계	10671	100.0	45,566,399	100.0	100.0

<표 5-4> 인구표본과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 비교

		관찰수치		모집단		가중치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대	10대(14세이상)	1047	9.8	3,508,590	9.4	11.3
	20대	1456	13.6	6,510,330	17.5	15.4
	30대	1944	18.2	8,111,929	21.8	19.4
	40대	2227	20.9	7,939,968	21.3	23.4
	50대	1725	16.2	5,075,593	13.6	13.3
	60대이상	2272	21.3	6,135,287	16.5	17.2
	소계	10671	100.0	37,281,697	100.0	100

\* 인구표본과 모집단간의 연령별 분포상황에서 나타나듯이 가중치가 적용된 표본 결과가 다소 10대집단을 과장하고, 20~30대 연령비율을 다소 낮게 반영하고 있어, 주의를 요함.

□ 추정

- 표본가중평균

$$\bar{y}_G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I[hij \in G]}{\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I[hij \in G]}$$

- $h = 1, 2, \dots, H$  : 지역층 ( $H = 25$ )
- $i = 1, 2, \dots, n_h$  : 조사구 ( $n_h$ 는  $h$ 지역 내 조사구수)
- $j = 1, 2, \dots, m_{hi}$  : 대상가구 ( $m_{hi}$ 는  $h$ 지역 내 총가구수)
- $w_{hij}$  =  $h$ 지역의  $i$  조사구내  $j$ 번째 가중치
- $y_{hij}$  =  $h$ 지역의  $i$  조사구내  $j$ 번째 관심변수의 관측값

$$I(hij) = \begin{cases} 1 & \text{if } I[hij \in G] \\ 0 & \text{otherwise} \end{cases}$$

- 분산추정식 : Taylor series 방법

$$\widehat{Var}(\bar{y}_G) = \frac{\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w_{hiG}(\bar{y}_{hiG} - \bar{y}_G) - \frac{1}{n_h} \sum_{s=1}^{n_h} w_{hsG}(\bar{y}_{hsG} - \bar{y}_G)]^2}{(\sum_{h=1}^H \sum_{i=1}^{n_h} w_{hiG})^2}$$

$$\cdot W_{hiG} = \sum_j^{m_{hi}} w_{hij} I[hij \in G]$$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CV)

$$- \widehat{SE}(\bar{y}_G) = \sqrt{\widehat{Var}(\bar{y}_G)}$$

$$- \widehat{CV} = \frac{\widehat{SE}(\bar{y}_G)}{\bar{y}_G} \times 100$$

## VI. 자료구조 및 특성

### 1. 데이터 구조와 특성

2008년 범죄피해조사의 데이터는 SPSS파일의 형태로 2가지 유형의 원자료가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형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작성된 사건조사표 수를 기준으로 사건이 케이스가 되고(전체 10,835 사례수) 주요변인으로는 (가구주를 통한) 가구관련 조사내용, (가구주 및 가구원을 통한) 개인의 피해여부 선별질문 등 기초조사표의 내용, 그리고 각 개인 또는 가구가 응답한 사건조사표의 항목이다. 또한 사건조사표 문항을 기준으로 판별기준식으로 재구성된 범죄유형에 따른 피해경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데이터는 조사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사람이 케이스가 되고(전체 1,0671 사례수) 첫 번째 데이터와 동일한 변인을 담고 있다. 즉, 두 번째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이 응답한 사건조사표 건수별 내용이 포함된다.

가구관련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행정구역)
- 조사구특성
- 주택유형
- 세대구성
- 거주안정성(거주기간, 영업활동여부 및 표식여부, 5년내 이사횟수)
- 주택소유여부
- 가구전체소득
- 집을 비우는 시간정도
-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조치나 활동정도

개인관련 주요 기초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학력, 장애여부, 외국인여부 등)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합효율성 및 범죄예방활동
- 범죄피해여부 회상질문
- 특별조사이슈 : 보이스피싱 및 신용도용 피해여부 및 피해내용
- 일상활동(외출교통수단, 늦은 귀가)
- 인터넷을 통한 일상활동 및 사용빈도
- 일상생활 중 법준수 정도(일탈수준)

각 개인 또는 가구가 겪은 범죄피해사건 관련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점검항목(보고사건유형확인/ 현 주소지발생여부/ 연속범죄 판단여부)
- 사건발생일시장소
- 사기피해여부 및 피해내용(유형, 피해양상, 사기수법, 재물교부양식 등)

- 주거침입여부 및 내용(현장이 있었는가/누가 있었는가)
- 무기·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여부
- 신체적 공격여부별 사건내용
- 신체피해(유형, 치료장소, 비용, 노동손실일수, 피해보상여부 등)
- 피해자대응 및 반응(현장이 타인존재여부/피해자음주여부/보호대응행동)
- 가해자특성(인지경로, 가해자유형, 인원, 성별, 연령대, 음주여부, 관계)
- 재산피해
- 정신적 피해
- 사건경험이후 재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변화
- 사건경험이후 범죄피해 두려움 변화
- 사건경험 전후 정서변화
- 경찰신고처리현황

\* 각 데이터에서 개별고유인식번호(ID)는 번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1) 가구인식번호는 “조사구번호+거처번호+가구번호”이며 (2) 개인의 고유번호는 “가구ID+가구원번호(이때 가구주는 모두 1번으로 통일됨)”가 된다.

## 2. 분석 범주의 재구성

재설계된 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유형은 각 사건조사표에 기입된 범죄수법 및 피해양상 등 사건의 구성요건들을 종합하여 판별된다.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가구대상범죄의 경우 ① 주거침입절도, ② 주거침입강도, ③ 주거침입손괴, ④ 단순주거침입, ⑤ 단순손괴사건을 독립단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개인대상 범죄의 경우 ⑥ 절도, ⑦ 강도, ⑧ 상해, ⑨ 단순폭행, ⑩ 강간, ⑪ 강제추행, ⑫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⑬ 단순협박, ⑭ 사기 등을 기본형 범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가. 범죄유형 판별조건식을 통한 범주의 재구성

각 사건조사표의 범죄유형을 판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 6-1>와 <표 6-2>의 [범죄유형 판별 조건식]을 가지고 새롭게 범죄유형 변수를 재구성하여 data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표 6-1> 가구대상 범죄유형 판별조건식

	침입여부 [문7]	폭행여부 [문11]	사건내용 [문12]	공격시도 내용 [문13]	신체공격 내용 [문14]	탈취피해 여부 [문25]	손괴피해 여부 [문31]
주거침입	예	예			성폭력 피해없음	예	
강도	예	예		성 폭 력 피해없음		예	
주거침입	예		강제로 빼앗김			예	
절도	예		몰래 가져감			예	

주거침입 손괴	예		재물파괴만 발생함		예
단순침입	예		주거침입 자동차침입		
단순손괴	아님		재물파괴만 발생함	아님	예
주거침입 기타	예	없음	위협· 괴롭힘만 발생함		
	예	예		아님	잘모름

<표 6-2> 개인대상 범죄유형 판별조건식

	가구주 경우만 해당 발생지역	해당 침입여부	속임피해 여부	폭행여부	사건내용	공격시도 내용	신체공 격내용	신체피해 여부	탈취피해 여부
	[문5]	[문7]	[문9]	[문11]	[문12]	[문13]	[문14]	[문15]	[문25]
강도		없음		예			성폭력 피해없 음		예
		없음		예(미수)		성폭력 피해없음			예
		없음			강제로 빼앗김				예
		잘모름		예			성폭력 피해없 음		예
		잘모름		예(미수)		성폭력 피해없음			예
		잘모름			강제로 빼앗김				예
절도		없음			몰래 가져감				예
		잘모름			몰래 가져감				예
사기			예						
상해				예			성폭력 피해없 음	예	아님
				예		성폭력 피해없음		예	아님
단순 폭행				예			성폭력 피해없 음	예	아님
				예		성폭력 피해없음		예	아님
강간				예			강간 (미수)		
				예		강간위협			
강제				예			성추행		

추행	시도		
	예	성추행 시도	
스 도 킹		음란혐오 접촉추적 등괴롭힘	
단순 협박	없음	욕설위협	아님
	잘 모름	욕설위협	아님

가구대상 범죄유형 가운데 주거침입강도의 경우를 예로 기본적인 판별조건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침입강도의 경우, 세 가지 조건판별식이 성립되는데, 그 이유는 각 변인구성체계의 연계성에 따라 응답변인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1조건식을 설명하면, 사건조사표의 응답내용이 주거침입여부를 묻는 [문7]의 응답에서 “그렇다” 또는 “시도가 있었다”는 조건 + 폭행여부를 묻는 [문11]에서 응답이 “그렇다” 또는 “그럴뻔 했다”는 조건 + 신체공격공격내용이 성폭력관련내용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 + 재산탈취피해여부를 묻는 [문25]에서 “그렇다” 또는 “그럴뻔 했다”는 응답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해당 사건을 비로소 “주거침입강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탈취”는 빼앗긴 경우 뿐만 아니라 도난당하거나 속임을 당한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때 조건식에서 신체공격내용과 관련하여 성폭력관련내용이 아니어야 하는 조건이 결합된 이유는 만일 성폭력이 결합된 주거침입강도강간 사건일 경우, 우리의 “기본형 범죄유형” 결정규칙(<표 6-3> 참조)에 따라 강간(성폭력)의 위계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강간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제2조건식은 제1조건식과 비슷한 패턴이지만, 폭행여부가 구체적이기보다는 시도일 경우에 해당된다. 공격시도내용을 측정하는 변인이 제1조건식과 별도로 구성된 데 기인한다.

제3조건식은 구체적인 폭행시도는 없었지만, 사건내용이 “강제로 빼앗기거나 빼앗길 뻔한 경우”, 탈취피해와 관련해서도 “피해가 있었거나 당할 뻔한 경우” 응답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사건을 “주거침입강도”로 규정할 수 있다.

다른 범죄유형의 판별조건식들도 이와 동일한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기본형 조건식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피해사건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주로 주거침입과 다른 범죄유형들이 결합된 사건들로서 여기에서는 “주거침입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데이터상 판별조건식으로는 존재하지만, 다음 설명할 “기본형 범죄유형” 결정규칙(<표 6-3> 참조)에 따라, 대표적인 “기본형 범죄”로 재정리, 범주화되어 독자적 범주유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번 데이터의 기본형 범죄는 모두 14가지 유형을 추출하도록 판별조건식을 구성하고 있지만, 현재의 표본규모를 고려할 때, 수집된 사건 수에 근거하여 개별 유형별 결과치를 제시하는 것이 표본오차범위내에 있을 경우에는 좀더 상위의 범주로 묶어, 통계적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조사분석에서는 표본규모로 인하여 표본오차가 큰 “주거침입강도”, “강간”, “스토킹” 등의 범죄유형은 독립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관련 범죄유형과 묶어 상위범주의 결과치를 제시하고자 한다.<sup>9)</sup>

9) 이에 관해서는 『2008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참고바람.

## 나. 기본형 범죄유형 결정 규칙

만일 범죄유형이 한 사건에서 일종의 경합 또는 결합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 그 사건의 “기본형 범죄유형”은 범죄 심각성의 위계규칙에 따라 규정된다. 즉, 우리는 범죄의 위계규칙을 기본적으로 강간·강제추행 > 강도, 절도, 폭행 > 스토킹 > 손괴, 협박, 주거침입 등의 순으로 정하였다.

가령, 단순협박 혹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사제가 결합된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협박이나 주거침입은 스토킹범죄의 하위구성요소로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의 위계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 해당사건은 ‘스토킹’ 사건으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논리에서 상해폭행이 강간이 중복된 사건이나 단순폭행과 강제추행이 중복된 사건들은 모두 성폭력(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의침해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또한 단순주거침입 또는 단순손괴보다는 주거침입절도 또는 주거침입강도의 위계수준을 더 높게 평가한다. 이번 조사의 데이터에서 중복 범죄피해사건의 범죄유형 결정규칙을 정리하면, 다음 <표 6-3>과 같다. 이렇게 각 해당사건의 성격을 기초로 기본형 범죄유형을 규정한 후, 각 유형별 추가분석을 통해서 결합범죄 및 경합범죄유형을 판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표 6-3> 중복 범죄피해사건의 기본형 범죄유형 결정규칙

중복 범죄피해의 경우			기본형 범죄유형
대상	범죄피해유형1	범죄피해유형2	
가 구 주	단순주거침입	스토킹 강간 혹은 강제추행	스토킹 강간 혹은 강제추행
	주거침입강도	강간 혹은 강제추행	강간 혹은 강제추행
	주거침입강도	스토킹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스토킹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단순)손괴	스토킹	스토킹
가 구 원	강도	강간 혹은 강제추행	강간 혹은 강제추행
	폭행	강간 혹은 강제추행	강간 혹은 강제추행
	스토킹	절도 혹은 강도	절도 혹은 강도
	협박	스토킹	스토킹
	강간	스토킹 혹은 강제추행	강간